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1

발의연월일: 2020. 6. 25.

발 의 자 : 윤한홍·한무경·태영호

강대식・이명수・홍준표

곽상도 · 김영식 · 이만희

권성동 • 추경호 • 강기윤

김기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 중 하나인 신고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신고자에게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신 고인이 해당 내용의 처리여부를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수리 지연에 따 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2항, 제10조의2제6항·제7항,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6항·제7항, 제11조제8항, 제11조의2제2항, 제29조제7항, 제39조의2제3항, 제39조의8제5항·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의5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가 신고서·변경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변경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39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신고서·변경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39조의8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2항, 제10조의2제6항·제7항,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6항·제7항, 제11조제8항, 제11조의2제2항, 제29조제7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39조의8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의 승계 등) ① ~	③ 제7조(사업의 승계 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
	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
	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u>한다.</u>
<u> <신 설></u>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
	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
	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
	리한 것으로 본다.
<u>④</u> (생 략)	<u>⑥</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8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고) 제8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①
(생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 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 다.
-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 ⑤ (현행과 같 음)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 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 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 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4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 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 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4(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생 략)

<신 설>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 인 등) ① ~ ⑤ (생 략) 인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신 설>

- 제10조의4(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 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 다.
 -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6
 -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 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 ⑦ (생 략) <신 설>

제11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제11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생략)

<신 설>

제29조(안전관리자) ① ~ ⑥ (생 략) <신 설>

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가 신고서·변경신 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 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변경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된 것으로 본다.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 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 다.

제29조(안전관리자) ① ~ ⑥ (현 행과 같음)

⑦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 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⑦ (생략)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 ⑤ (생 략)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 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 경신고가 신고서·변경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 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